

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6 ~ 77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6. 12. 7.
제 출 자	거 창 군 수

1. 개정이유

-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명칭이 「수돗물평가위원회」로 바뀌었고 또한 위원회의 기능도 수돗물의 수질 검사뿐만 아니라 수도시설의 운영·관리까지 자문범위가 확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설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명칭을 「수돗물평가위원회」로 변경 (제명 및 안 제1조).
-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여 수질검사뿐만 아니라, 시설의 운영·관리까지 자문범위를 확대(안 제2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- 「수도법」 제19조의2(개정 2005.12.29, 법률 제7777호)
- 「수도법 시행령」 (개정 2006. 6.29, 대통령령 제19573호)

나. 예산조치 : 없음.

다. 기 타

- (1)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(2)입법예고(2006.11.15 ~ 12. 6)결과 : 의견제출 없음.

거창군조례 제 호

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"를 "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"로 한다.

제1조중 "수도법"을 「수도법」으로 하고, "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"를 "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"로 한다.

제2조제2호중 "상수원·정수의 질에 대한 문제점 및 수질향상 자문"을 "상수원·정수의 질에 대한 문제점 및 수질향상 자문과 수도시설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자문"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구성위원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</u> <u>및운영조례</u>	<u>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</u> <u>및 운영 조례</u>
<p>제1조(목적) 조례는 <u>수도법 제19조의2</u>의 규정에 따라 <u>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<u>상수원·정수의 질에 대한 문제점 및 수질향상 자문</u> 3.~4. (생략) 	<p>제1조(목적) 조례는 「<u>수도법</u>」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<u>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상수원·정수의 질에 대한 문제점 및 수질향상 자문과 수도시설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자문</u> 3.~4. (현행과 같음)